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413호 2014. 10.22 (수요일)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18호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2
- 하동군 규칙 제1119호
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폐지규칙.....
4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4-639호
2014년도 2기분(정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5
- 하동군 공고 제2014-646호
하동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14
- 하동군 공고 제2014-651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입법예고 .....
25
- 하동군 공고 제2014-657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안 입법예고.....
32

<b>회 람</b>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 2 ) 제 413 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10월 22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18호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제1조(「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신축 또는 증축 등의 허가나 신고 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2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5조(「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유지 할 것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하동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제12조의2제5호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소년의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 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4 ) 제 413 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10월 22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19호

**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4 - 639호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독촉분)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납기 내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 하 동 군 수

1. 제 목 :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4. 10. 13 ~ 10. 28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교부 및 기타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055-880-2565)

## 하 동 군 공 보

( 6 ) 제 413 호

2014년도 2기분 정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차량번호	송달주소	반송사유
세양정보통신(주)	경남81무2488	경기 용인시 처안구 남동 614번지 1호 토텔레콤주식회사	수취인불명
정형재(황선명)	03라1963	김해시 진례면 신분리 40-1 6/3 (황선명김해시 고모로 82 :이사)	이사
하길용	경남34러5749	사천시 벌리동256-828/2	주소불명
대한개발주식회사	경남81무2997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63-5	수취인불명
(주)강남투어여행사	경남72바9739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10	이사
봉화건설(주)	97나1366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77-1 (97나1366)	이사
청수건설(주)	96우9786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77-1(3층)	이사
대흥건설(주)	경남8더3614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11-8	이사
지신건설(주)	경남81무2000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11-57	수취인불명
청일건설(주)	경남8소2611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54-33	수취인불명
정호건설(주)	92로2379	하동군 하동읍 향교길 27 영승빌라 602호	이사
박만호	48어1104	하동군 하동읍 구룡길 57	수취인불명
손광명	19구6982	경기 평택시 포승읍 여술길 9-5 302호	방치
김동현	경남80두7896	하동군 하동읍 향교길 1-6	이사
대한예수교침례회하동교회	79버7780	하동군 하동읍 시장길 8	이사
하동건설(주)	경남81무5155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2-2 (7/1~	수취인불명
(주)베토	86조8652	하동군하동읍읍내리237-80베토	이사
고옥희	경남1보4602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6-14 (6/2~	수취인불명
정진호	96무73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15번길 12 강병원룸 303호	이사
(주)탑소경	경남81무2813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4 (경남81무2813)	이사
김창호	18루1667	하동군 하동읍 송림길 11-3	수취인불명
황정운	84다7916	하동군하동읍경서대로157	이사
김영자	96무7187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47	수취인불명
이홍열	97더3943	충남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137	이사
안호용	32다9390	하동군 하동읍 산기리 355-1 4/1	이사
인부용	경남47나2650	하동군하동읍산기리355-14/1	이사
김태삼	97더6168	하동군 하동읍 삼진강대로 1874 203호	이사
이정량	96무7374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71 대경송림타운101-103 (4대) 하동읍 중앙로70 수취인불명	이사
최영석	09머5179	하동군 하동읍 산북길 20 대망파크맨션 1동506호	이사
김세희	경남70도1260	하동군 하동읍 동광길9-4 (중앙로 70:수취인불명)	이사
동지산업개발(주)	81가7437	하동군 하동읍 화삼리 860-2(11/2~	이사
유승민	84버2489	하동군 하동읍 중사2길 1 102호	이사
오청수	04부1898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46-6	이사
정현미	65두5170	하동군 하동읍 화삼길 236-3	이사
권태현	66수8961	하동군 하동읍 흥림2길 5 (14/1~	이사
박태용	경남81무2213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6-5 (2/1~	이사
최현문	경남81무4633	하동군 하동읍 향교2길5-6 (1/1~	이사
김성진	경남71라2590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53-1	이사
황용길	80서9947	하동군하동읍군청로143	이사
추동진	경남81무3990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53-1 (3/1~	수취인불명
김병채	96주2091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16 (12/1~	이사
이정열	경남71라1517	하동군 하동읍 송림3길 26	수취인불명
오성민	경남81나4879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11-53 흥한보알맨션 나동107(목 포사:이사,여수사: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창환	97거2257	하동군 하동읍 송림3길 19-4 (8/2~	이사

## 하 동 군 공 보

( 7 ) 제 413 호

(주백두대간	97머7938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38-4	이사
(주삼열설비	97나1508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18-13	이사
손낙권	47주5157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46-6	이사
소용길	경남47나2043	하동군 하도읍 부두길 7 한영@307호	이사
하경남	84거3469	하동군 하동읍 송림3길 8 (10/1,10/2)	이사
(주하전전기	경남71라1366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77번지	이사
허용도	경남34가5157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	이사
신동혁	88마9906	하동군 하동읍 굴다리길 14	이사
김영균	경남37라9067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9	이사
임군택	90고3635	하동군 하동읍 부용길 8-13	이사
(유)천지신림	31러3759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11-57 남영빌딩 404호	수취인불명
최연국	10마4857	하동군 하동읍 하미길 56-4	이사
(주두양기업	경남82나4545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3-15 (6/1~7/2)	이사
황용순	17나513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221번나길 118	수취인불명
부영미	경남1누3004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57 (2/2~	이사
양성백	97거2019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28번지 대경송림타운 102-808 (10/1~12/2 :5건)	방치
권영자	96루6451	하동군 하도읍 화심길 236-3	이사
이병기	경남81무3271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 19	이사
김병기	경남47가9514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23	이사
김동숙	96우5437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52-21	이사
문효선	24두2755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5-6	수취인불명
김영환	경남70고1869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808-26	이사
김성완	52거9693	하동군하동읍경서대로71대경송림타운102-102	방치
정운영	경남81무3825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43 신촌빌라 203호	이사
전익주	01나3859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44	수취인불명
박영수의1(박재현)	80더1057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16-3	이사
이계규	82마5370	하동군하동읍향교1길23	이사
김경민	48어1825	하동군 하동읍 동교2길 11(11/1,11/2)	수취인불명
동원산업(주)	경남7모1512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21-92	수취인불명
변영길	97거2969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005-1(경기관음당길39-8 :방치)	이사
쌍용블럭	경남81무9129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349	이사
김범섭	50고8130	하동군 하동읍 오룡정길 4-1	이사
박지환	97머6584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576-10	이사
정규철	21러2049	하동군 하동읍 소재2길 3-6	주소불명
이인정	65노4585	광양시 폭포사랑길 90 정미@23-204	방치
조선제	97거2712	하동군하동읍시장1길27	이사
오동환	경남8즈1256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5-7	이사
양찬호	66가9778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5	수취인불명
안만영	87누6395	하동군 하동읍 소재2길 34-2	이사
이은아	경남81무1760	하동군 경서대로 243-5	이사
송종찬	95루8970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19 (6/2~14/1 :17건)	이사
허만중	경남5라9336	경기 시흥시 신흥마을5길 17	이사
이범상	05보7119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71 대경송림타운 102-1101	방치
김성희	경남81무5707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26-20	이사
박자용외1(박희진)	82나2714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70	수취인불명
오병태	경남8즈1256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19-1	이사
(주강산전기	경남81무5885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10-1	이사
이상혁	27모3572	하동군 하동읍 하미길 22-20	이사

## 하 동 군 공 보

### ( 8 ) 제 413 호

(주)누리	97더6565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14	이사
반평안	경남47나2039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흥한아파트 나동507호	이사
김연자(0130-0201)	제일안경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56-4	이사
정동민(0079-0001)	알뜰살뜰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20-1(부산동명로152번길:이사)	이사
이룡완(0253-0001)	쌈바	하동군 하동읍 시장길 15-1	이사
조왕래(0214-0001)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64-19	이사
김광형(0241-0001)	95구6641	하동군 하동읍 시장길 25 (금성면 산업로 485 해양파크 103-303호 :방치)	이사
최현희(0253-0001)	롯데마트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7-13	수취인불명
김미란(0266-0001)	나비엔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84	수취인불명
임순삼(0051-0001)	골든벨	하동군 하동읍 중앙길 8-1	이사
정상건	68부5483	하동군적량면공월로11 (68부5483) (창원시 성산구용지로 70 성원오피스텔 628호"방치)	방치
오테영	경남7느1520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35 (경남7느1520,97내722) (2/2~	이사
이부평	경남90자7605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7 (11/2~	수취인불명
이경구	06버8332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5-10	수취인불명
김상기	80거4189	하동군 적량면 신촌길6-16 (12/1~	수취인불명
정인자	48어1189	하동군적량면계성길22-15	이사
김영철	경남80무6754	하동군적량면하동산길12-27	수취인불명
이정호	75나3785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 122-15	수취인불명
하석근	경남48가6835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31	수취인불명
강영주	95주9343	하동군 적량면 서재길 323-66	수취인불명
김한호	97거2170	하동군 적량면 난정길 23	수취인불명
박상태	09무5415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36-35	이사
정용수	경남81 무6170	하동군 적량면 관동길 52-5	이사
대진종합건설	경남47가2884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162-4 (폐업) (4/2~	이사
(주)부영상사	경남6즈1240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107 (6/2~8/1)	이사
(주)세창포장공업	경남81마1220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105번지 (9/1)	이사
(주)이엔티	경남47나3129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162-4 (폐업)공설운동장로 254 (04/1~	이사
이씨엠(주)	96무7089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109번지 (04/2~	이사
정채원	48어1058	하동군적량면안성길59-12	수취인불명
대흥산업(주)	경남81 무9039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110번지 6/1~	이사
김동광	경남30고1647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48 (8/1~12/1 :9건)	
(주)용화	경남81 무5385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36-11 (04/2~	이사
서원준	15구9854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48 (거제시 탑곡로4길31(아주동)주소불명 반송 )	수취인불명
경원건설(주)	경남81 무3599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823번지 (12/1~	이사
김상옥	47두9023	하동군적량면공월길52	이사
하동교회(0027-0001)	하동교회	하동군적량면공설운동장로169	수취인불명
강창석	17나6378	하동군청암면금남길365-95	이사
강대주	경남81도3176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665-2 5/5 (9/2~	이사
강정훈	경남71라2403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570	이사
정혜연	61저6363	진주시 비봉로7번길 15-1	이사
정대성	51노1306	전남 해남군 북일면 원동길 13	이사
강진양	경남81무2741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353번지	주소불명
곽봉원	96주3862	남해군 남해읍 당념로82번길 10-4	이사
장광순	92다3600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64번길 10-6	수취인불명
정봉조(0017-0001)	골든파라다이스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130	수취인불명
중근(0017-0001)	골든파라다이스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130	이사



하 동 군 공 보

( 9 ) 제 413 호

차영아(0017-0001)	골든파라디이스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130	이사
조양건설(주)	경남81무1543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52-11	
최성암	94라6858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8 (12/1~	수취인불명
손명숙	27더7096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823	이사
김동철	24노2489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34-1	이사
임순덕	92구8082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580-8	이사
김종천	87마6205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85 해양파크빌 104-108호	이사
이윤배	84나9486	진주시 도동로240번길 12	이사
오진옥	경남81무6456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 208-4 (11/1~	이사
(주)케이통운	경남99버9142외20건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08번지	수취인불명
강통일	96무7566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71 (07/01~	이사
(유)해동기업	경남71라1576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75번지 (7/1~	이사
박상호	97나1792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8번길 90	주소불명
김수민	27노3117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85 해양파크빌 104-108호	이사
정상동	97버5118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85 해양파크빌 104-201호	이사
백대성	경남80나18989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27-8	이사
(주)와이지개발	82버6435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19-2 2층 (13/1~	이사
김창환	경남81모5052	하동군 금성면 연막윗길 17-6	이사
김진봉	경남81무4489	하동군금성면갈사리184 4/6 (1/1~	이사
박재홍	경남7도4435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90	이사
오창근	경남5거5765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73	수취인불명
한대봉	97거2485	하동군 금성면 고포마을길46 7/2~	이사
박용길	96루3338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39-10	이사
전덕울외1	97나1811	하동군 금성면 고포마을길34 (11/1)	이사
진흥태	경남81무3650	하동군 금성면 길목길217 (10/1~	이사
삼재근	경남71리2330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88-3	이사
강봉기	경남81무5070	하동군 금성면 회목길 9	이사
이남식	05로5841	하동군 금성면 나팔윗길 40-2 (13/1~	이사
정찬수	83투1771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앙길 14-5	이사
김인철	94주6799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57-17	이사
남재동	97거2531	하동군 금성면 명덕윗담길11	이사
(주)한아름	96부1091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67 (13/02~	이사
박인섭(0229-0001)	하동해법학원의외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송보@101-1103	방치
김종현(신정자)	(0039-0001)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510-1	이사
김경희(0044-0001)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77	수취인불명
박찬준	97거2143	하동군 황천면 구학길 89 (13/2)	수취인불명
박종근	70누1231	하동군 황천면 문화2길 21-1	이사
임채용	경남7모4790	하동군 황천면 경서대로 1153	이사
이남수	96도7387	하동군 황천면 월매재길16-18	이사
정의화	91더4236	하동군 황천면 흥보길 153-3	수취인불명
박동목	95보4034	하동군 황천면 문화길16 (10/2~	이사
조치중	97거1150	하동군악양면상중대1길12-21	수취인불명
이선호	경남34다5120	경북 경주시 양남면 양남항구길 125	주소불명
한명오	81가7431	하동군 악양면 중기길 6-120	이사
손봉기	17가2320	하동군 악양면 상중대1길 2554-74	수취인불명
정찬수	경남1므28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어동1369번지 정우빌라c동302호	방치
정해준	63노5959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769-9	이사

## 하 동 군 공 보

( 10 ) 제 413 호

장문열	82주9898	하동군 악양면 대축길 49-12	이사
김재근	80노8498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282-214	이사
문삼순	96무7098	하동군 화개면 원범왕길 24-1	수취인불명
신태성	경남7노7227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214	이사
윤성근	15모7229	진주시 집현면 남강로 1805	수취인불명
홍경천	18머5449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4	수취인불명
김정호	34고2428	하동군 화개면 상덕길 46-1	수취인불명
안창남	72노4248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8번길 19-1 해왕베스트빌라 301호	수취인불명
함재도	33내1118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70-10	이사
김태홍	87내5711	하동군 화개면 의신길 26-7 (13/2~	이사
(주)금우	97거2717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87 (9/1~	이사
정호진	04부1486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주소불명
이미옥	13려3521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444-3	이사
조찬식	81가7598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177-10	이사
이동준	04부1718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수취인불명
김정목	61가9119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이사
서창원	50노3262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수취인불명
백준기	96려1736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수취인불명
강호동	62오6154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수취인불명
이호삼	경남82내6238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수취인불명
박상옥	97내1363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54-10	수취인불명
민병원	경남7노3755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21	이사
정규철	65거4463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15	수취인불명
김형택	90두9401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8-4	이사
임용택(0091-0001)	79버7143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888	이사
조홍주(0066-0001)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494	이사
금순(0084-0001)	풍경속으로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946-18	이사
원의(0018-0001)	시장잡식당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0	수취인불명
푸른영농조합법인	경남80무3271	진주시 명석면 판문로 70 조용덕 (경남82무3271)	이사
박춘희	경남81머1297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 29-1 (11/2~	이사
재종덕	경남34내2389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12 대근하버빌타운 103-402호	이사
김영건	96무7856	하동군 옥종면월향리산90번지	이사
정복근	66가4980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520-18 (10/2~	이사
정충식	경남80무1750	하동군 옥종면북방우회길40-28	이사
최만진	97내3713	하동군 옥종면 신기동길 25	수취인부재
김진성	38내2849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629	수취인불명
손이근	경남80두5477	하동군 옥종면 산성길 18	수취인불명
권성현	65두2426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59	이사
정연민	경남80루7307	하동군 옥종면미골길94-1	수취인불명
신홍철	경남80무4807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317 7/1 (11/2)	이사
(주)풍성산업	경남71려2594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435-7 (6/1~	이사
(주)태화이앤씨	79버7668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435-7 (8/2~	이사
동남연와산업(주)	경남7도4413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산21번지 (3/1~	이사
(주)동명산업	경남8코2847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53 (5/2~	이사
홍경숙	30가5127	하동군 옥종면세종태실로567	이사
정중석	경남80무1750	하동군 옥종면북방우회길40-28	수취인부재
김민형	97내1657	하동군 옥종면세종태실로567	이사
백환석	97머7497	하동군 옥종면 의양길 16	이사

# 하 동 군 공 보

( 11 ) 제 413 호

이인우	경남7모3106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09-3	수취인불명
이준호	91라5423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61-1	이사
(유)창진개발	경남47나2575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435-7 (9/2)	수취인불명
부평건설(주)	경남7나2532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15-5 (6/2~	이사
(주)수림건설	경남81무9168	하동군옥종면양구리453-8	이사
성현국	경남39다8693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728 (10/1~11/1)	이사
강도영	경남80무4092	하동군옥종면대골리66-6	이사
손오현	79노1031	하동군 양보면 집흥길 38 (12/1)	이사
김연희외1	08도7618	사천시사천읍정의리 32-2번지 남양맨션 나눔601호	방치
황재용	79저6641	하동군 양보면 원양구정길 14-5	이사
안진근	경남81고1604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97 (11/1~	이사
평수(0010-0001)	토지환경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356-107	이사
이동희	39모6769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280-3 (8/1)	수취인불명
김정옥	08도7915	하동군 북천면 계산길 55 (11/02,12/01 :2건)	수취인부재
한상각	97우1068	하동군 북천면 기평길 37 (13/2	이사
박희갑	73조8575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515 (12/1~	이사
박명자	11다5515	하동군 북천면 직전1길 19-6	수취인부재
한군상	경남81고6893	하동군 북천면 직전1길 10-1	수취인부재
이종열	65다4521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28-14	수취인부재
김상준	경남81무4342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104-7	수취인불명
허이송	경남8즈2480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300번길 48	수취인불명
김청수	경남82나1972	하동군 북천면 고무실길 24-4	수취인부재
신정우	84라1844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406-1 (시망)	수취인부재
이재곤(0019-0001)	박요양병원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9번지	이사
임동규(0019-0001)	지리산자연요양원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9-5	이사
서경한	경남7나1300	경기화성시장안면수춘리688번지(고전전도126번으로주소변경) *경기.고전다변송	이사(28건)
(유)하성건설	경남81무6465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147-9 (4/2~	이사
김평정	96루5093	하동군 고전면 신월길 7 (10/2,11/1)	이사
정연정	92아6361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36-3 (13/2,14/1)	이사
김덕남	84라8353	하동군 고전면 시목길 36	수취인불명
김민성	80누8790	하동군 고전면 신월길 3	이사
김민진	96부8623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41	이사
김영주	경남81시8602	하동군 고전면 성평돌담길 68	이사
김남구	81마3403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85번길 10-4	이사
강석현	경남81무2608	하동군 고전면 월진길 32-5(경남81무2608) (11/2~	이사
강경모	84가7597	하동군 고전면 월진길 32-5(경남81무2608) (11/2~	이사
김은주	61우1022	하동군고전면신월길7	이사
김주식	경남81두4418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 (8/2~	이사
조재균	83가9128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184-34 (13/1~	수취인부재
조기홍	경남8즈1612	하동군 고전면 잔너리길 95-8 (01/01~	이사
안승수	21오6196	하동군고전면시목길21	수취인부재
차영남(0039-0001)	스타무인텔	광양시 옥곡면 의암3길 1184-28	주소불명
(주)벽산산업	경남8츠1593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377-12 (4/1~8/1 10건)	이사
윤영삼	경남47가9590	광양시 중동 1360-24번지 10/2 305호 (진교면 미진 @101-801번경):진교도이사	이사
노기현	65노3997	전남 순천시 옥천길 82	이사
주식회사세웅테크	01두8978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272 (9/2,10/1)	이사
김종현	경남81무5574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90	이사

## 하 동 군 공 보

( 12 ) 제 413 호

유경화	경남81무1333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87 (시설물(고려쌍크판매장),차) 30건	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	75마6009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467 11/2~	이사
정국일	경남7구2374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72	이사
김길국	경남81무6468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87 (12/1~	이사
민경철	79버3202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198-1 공군아파트 301호	방치
박정호	87러5803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198 공군아파트 203호	방치
조용호	93수4077	경기 평택시 평택3로11 주공아파트 413-104호	수취인불명
김덕봉	경남7도5090	하동군 진교면 사기아름길 40-27	수취인불명
하남축산영농조합	경남81무1567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684-1 (5/2~	이사
주현태	65누2500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8 미진스위트빌103-108 (진주 강남로167번길 10-6 :이사)	방치
정옥순.서현철	65다5834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57	이사
박성삼	경남70러6220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38 미진스위트빌103-1306 (9/2~	이사
최현기	65거7816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10 (7/1~9/1)	이사
김종현	경남81무1802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90	이사
김정태	경남47나1373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10 (04/2~	이사
전광복	55마4521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109-2 (10/2~	이사
합자회사진교기업농업회사	경남81무1675	하동군진교면송원리51-175	이사
홍승우	96무5504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43 (6/1~	이사
진웅건설(주)	13부7437	하동군진교면진교리302-24 (10/2~11/1)	이사
김병균	09버8524	하동군 진교면 송내길 5	이사
(주)에림	66무7773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197-17번지	이사
이선우	경남71라1570	하동군진교면경충로689(경남71라1570)	이사
(주)신우	93다6091	사천시 사남면 공단로 59-21 2층	방치
(주)경남아스콘	경남82가2611	하동군진교면양포리377-1(달구지길95-47)	이사
박동일	경남81무9191	하동군 진교면 소전방길 17-14	이사
조동식	97나2637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46	이사
구경선	87보8462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25	이사
김현철	64누4771	하동군 진교면 백련길 114	이사
신은혜	65로1917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8 미진스위트빌 102-1105	방치
홍종열	경남71마7244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06-3	수취인불명
김우식	79저1538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101	이사
정현우	경남80무2541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58-9	이사
김철겸	97거2667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126-1	이사
강석만	85루5392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00 (13/2~	수취인불명
(주)케이티씨	65다4143	하동군진교면안심리257-5	이사
한운성	경남7도7365	하동군진교면 양포리 292 (사망말소) (1/1~7/1 4건)	이사
(주)길따라 .한우리	경남72버4408 외 57	하동군진교면관곡리210-1 (하동고속관광)	이사
정종인(0004-0001)	백합다방	하동군 진교면 진교중앙길 14-3	이사
정영부(0051-0001)	진교주차장	하동군 진교면 진교중앙길 14-8 진교주차장	이사
추병철(0032-0001)	정치과외1개소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62	이사
김진권	경남8오2366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60-2번지 노랑빌라302호 (1/1~	방치
오인기	96우6955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085	이사
박영기	경남81무6542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73-34	이사
장종열	57어8762	하동군 금남면 사궁길 13 심화@501호	주소불명
유범희	84다7709	하동군 금남면 사궁길 12	이사
정재훈	96저4386	하동군금남면중평해안길245	이사
장태열	경남81무1807	하동군 금남면 중평큰골목길 6	이사

하 동 군 공 보

( 13 ) 제 413 호

김현철	97나3863	하동군 금남면 주교로 169-21 (97나1845) (9/2~	이사
(주)한빛산업	경남81무4838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섬진강대로 972 :03/01)	수취인불명
(주)하이랜드	경남47나2857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216 (대왕골길 20 :3/2~	이사
(주)미래산업개발	97거2304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10/2,11/1)	이사
(주)석진산업	경남34나2842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8/2 (섬진강대로 972 :11/1~	이사
(주)지구환경	경남7도7966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216번지(11/2)	수취인불명
(주)케이엔	94도7867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867	이사
에코탐성	95머5622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17 전도상가타운305호	이사
하남토건(주)	경남80루5951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08 (경충로 :9/2~	이사
노길순	92러1730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50-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0번길 30 :수취인불명)	이사
조충열	09리9604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254-154 (9/1~	이사
이재성	84마4438	하동군 금남면 소송양탈길98 (평양시 금호동712번지 동백@1동 305호:방치) (11/2,12/1)	이사
허중용	82저7224	김해시 외동 1247번지 2층 201호 (금남작은삼내길:이사:6/1~	이사
서원호	경남81무5035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92-1번지 4/4 (10/1)	이사
조현몽	89저6009	하동군 금남면 금오길 152 (3/2~	이사
윤대경	경남81무2249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99번지 7/2(경남81무2249) (9/2~	이사
하만진	34고2901	하동군 금남면 태봉길 18-1	이사
김홍진	52부5824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132 (12/2~	이사
박종식	52거9186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221-2번지 4/3 (9/2,10/1)	이사
김정환	66머6494	하동군금남면중평해안길245	이사
박성일	28고2918	하동군 금남면 중평해안길 115-8	수취인부재
XIAOBO	84소1221	하동군금남면소송양탈길94	수취인불명
천명수	04부1827	하동군 금남면 조금2길 28-3 (8/1)	이사
지리산영농조합법인	경남81무4249	하동군 금남면 구고속도로95	이사
(주)신한중공업지점	86조8793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2번지 (12/1~	이사
전영지(0058-0001)	전도당구장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8/2	수취인불명
강동용(0058-0001)	전기전자철물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8/2	이사
황영길	덕천대박마트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산145-1(사천 사남면 조동길 61: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행철(0010-0001)	할매재첩식당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537-1 하동할매재첩식당	이사

##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입법예고

『하동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2. 제정이유

- 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 나.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하동군이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2조)
- 나. 기본방침 (안 제6조)
- 다. 지원의 범위 (안 제7조)
- 라. 분야별 지원 사항 (안 제8 ~ 11조)
- 마. 지원절차 (안 제13 ~ 16조)
- 바. 정책 심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 (안 제17 ~ 24조)

#### 4.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농축산과, 전화 880-2672 FAX 880-2419, e-mail hjc8852@korea.kr)에게 그 의견을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16 ) 제 413 호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하동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군이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를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따른 것을 말한다.
5.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6.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군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18 ) 제 413 호

**제5조(소비자의 책무)** 군내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방침)**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육성·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을 육성
4.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5.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

**제7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위한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 지원
2.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 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의 지원
5.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 등의 사업
6.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군은 세계 농산물 교역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특용작물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3.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유통·물류비 등의 지원
4. 농수산물의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수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6.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7. 농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 하 동 군 공 보

( 20 ) 제 413 호

8.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9. 농어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보급사업
1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가축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8. 수산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9.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은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농어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① 군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어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를 출연하여 연차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하 동 군 공 보

( 22 ) 제 413 호

**제14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 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설치)** ①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하동군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업인 또는 군수가 신청한 농업분야 사업의 예산심의
4.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6.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자문
7.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8. 어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가 소득안정 등 어업·어촌 정책에 관한자문

10. 그 밖의 어업·어촌 발전에 관한 사항

**제1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농어업관계 기관·단체장, 농민대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농축산과장이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심의회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업소득 분과위원회
2. 과수원예 분과위원회
3. 식품산업 분과위원회
4. 축산 분과위원회
5. 산림 분과위원회

## 하 동 군 공 보

( 24 ) 제 413 호

### 6. 수산 분과위원회

③ 각 분과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장은 분과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부농육성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어업·농촌생산자 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4-651호

##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안 입법예고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 가. 우리군 홍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과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나. 300인 이상 단체가 우리군에서 행사를 한다면 행사 자체만으로도 전국에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음.
  - 다. 시설사용료 수익보다 우리군의 무한 홍보 효과가 기대됨.
3. 주요 내용
  - 가. 사용료 30% 감면대상 일부를 전액감면으로 조정(안 제7조제1호)
    - 1).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 2).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 나.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 신설(안 제7조제1호)
    - 1). 관외 300명 이상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 2). 그 밖에 군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 전화880-2492 FAX 880-2469, e-mail rokat1201@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26 ) 제 413 호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 1. 개정이유

대규모 캠핑대회 등 행사 유치로 관광하동 이미지 홍보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위하여 다목적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용료 30% 감면대상 일부를 전액감면으로 조정(안 제7조제1호)

-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나.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 신설(안 제7조제1호)

- 관외 300명 이상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 그 밖에 군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하동군 조례 제2014-651호

##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전액감면(군 직영의 경우)

- 가.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 나.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다. 관외 300명 이상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군 홍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라.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p> <p>1.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p> <p>가.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p> <p>나.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p> <p>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p> <p>2. 비수기 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 체류자는 숙박시설 사용료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p>	<p>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p> <p>1. <u>전액감면(군 직영의 경우)</u></p> <p>가. <u>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u></p> <p>나. <u>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u></p> <p>다. <u>관외 300명 이상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u></p> <p>라. <u>그 밖에 군 홍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2. <u>100분의 30 감면</u></p> <p>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p> <p>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p> <p>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p> <p>라.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p>

# 하 동 군 공 보

( 30 ) 제 413 호

## 【현행조례 첨부】

###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 2011.08.04 조례 제1949호

( 일부개정 ) 2013.04.10 조례 제2001호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 2013.07.16 조례 제20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 관내로 한다. <개정 2013.7.16.조20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라 함은 하동군 군에서 캠핑장으로 지정 관리하는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3.7.16.조2015>
2. “모빌홈”이라 함은 원목을 소재로 만든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야영트레일러를 말한다.
3. “카라반”이라 함은 알루미늄, FRP 등을 소재로 만든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야영트레일러를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장기체류자”라 함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6. “성수기”라 함은 7월, 8월을 말하고 “비수기”라 함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관리자”라 함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캠핑장은 군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 숙박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제5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3.7.16.조2015>
  - 가.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 나.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 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신설 2013.7.16.조2015>
2. 비수기 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는 숙박시설 사용료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 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따라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15조(위탁운영자 행위의 금지)**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6조(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위탁운영자가 제15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운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17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위탁운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제18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7.16.조2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14 - 657호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 2. 제정이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대체 교통수단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행복택시” 및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행복택시” 운행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이용주민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4.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 나. 예산조치 : 2015년 당초예산에 확보계획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0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건설교통과, 전화 880-2932 FAX 880-2509, e-mail pjh47@korea.kr)에게 그 의견을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34 ) 제 413 호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가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군내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탑승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 하 동 군 공 보

( 36 ) 제 413 호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를 근거로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행복택시 탑승일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38 ) 제 413 호

[별표 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제2호 관련)

읍면	리	마을	비고(세부지역)
하동읍	흥룡리	먹점마을	밤골
	두곡리	서제마을	
	읍내리	연산마을	
악양면	신흥리	하신흥마을	
	신흥리	상신흥마을	
	매계리	매계마을	
적량면	관 리	관동마을	
	관 리	율곡마을	
횡천면	전대리	전대마을	윗전대
	애치리	애치마을	
	애치리	온동마을	
	학 리	개인마을	
고전면	범아리	매자마을	
	성평리	신덕마을	
금남면	중평리	중평마을	진구지
	대치리	대치마을	
	진정리	금오마을	
	계천리	계항마을	
금성면	궁항리	객길마을	
진교면	고룡리	남양마을	
	송원리	화포마을	
양보면	장암리	우성마을	
	지례리	가락마을	
청암면	중이리	심담마을	
옥종면	병천리	가덕마을	산성
	법대리	법대마을	외골
	대곡리	동곡마을	
	대곡리	한계마을	
	회신리	양지마을	

※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km로서 주변마을, 도로, 주민불편 등 제반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2】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탑승자 부담요금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 / 1대당

- ※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이 해당 소재지까지 탑승할 경우 버스로의 환승을 고려하여 택시 한 대당 100원의 요금을 부담한다.
- ※ 목적지가 해당 읍·면 소재지를 벗어날 경우는 해당 읍·면소재지부터는 정상 택시요금을 부담한다.





하 동 군 공 보

( 41 ) 제 413 호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탑승일지(    월)(제5조제3항 관련)

일시	택시번호	탑승자	탑승지	도착지	비 고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하 동 군 공 보

( 44 ) 제 413 호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